

#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161
------	------

2019. 11. 26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】

-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 11. 26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정책실장 조인동)

#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, 대학, 연구소에 대한 R&D 지원과 신기술 시장성 검증 확대를 통해 서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,

- 나.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
- 다.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 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(사무형)
-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1.1.~2022.12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- 수탁기관 : 서울산업진흥원(마포구 월드컵북로 400)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48,607백만원('20년 예산안)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2(사무의 위탁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, 산·학·연의 수요에

- 맞춘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
-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,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 증가,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가 가능함

#### 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
- 서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
-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
- 중앙정부 R&D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
- 기타 ‘市’가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# 라.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

-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(2019. 6. 21.) : 적정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2019. 9. 17.) : 적정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(2019. 10. 2.) : 적정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.

#### 나. 서울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현황

- 산학연 사업은 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(現 서울연구원)이 수탁기관으로 수행하였으나, 산학연 사업의 패러다임이 연구·이론 중심에서 기술화·상품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었음.

<산학연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>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(現 서울연구원) (2005년~2011년)	서울산업진흥원 (2011년~현재)
기초연구·원천기술	응용기술·상품화 기술
대학·정부출연연구기관	중소기업
학술적 성과	경제적 성과
기술개발 성공	상품화 성공

- 서울산업진흥원은 2011년 10월 서울시와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래 2차례 재계약을 하였고, 2019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1)에 따라 의회의 동의 대상이 되었음.

##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의 추진경과

-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507호) : '04. 8월
-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1년 단위로 위탁협약 체결 : '05. 3. ~ '11. 9월
- 지식기반산업 지원기구 통합계획(변경) 수립(시장방침 제337호) : '11. 9월  
- '서울산업통상진흥원' 내 지식산업 지원기구 「서울지식산업지원단」 설치
-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 : '11. 10. ~ '13. 12월
-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(재계약) : '14. 1. ~ '16. 12월
-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(재계약) : '17. 1. ~ '19. 12월  
- 총 83,857백만원('17년 22,982, '18년 23,150, '19년 37,725백만원)

- 현재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(이하 '산학연 사업')은 '서울형 R&D 지원 사업'과 국비 매칭 방식의 '공동협력 기술개발 사업'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<서울시 산학연 사업 추진 현황>

(단위 : 건, 백만원)

사 업 명	2017년		2018년		2019년		비 고	
	과제수	집행액	과제수	집행액	과제수	예산액		
합 계	227	20,803	225	21,900	343	37,725		
서울형 R&D 지원	210	19,369	210	20,761	317	33,600		
공동 협력 기술 개발 지원	정부지원 대응 투자	16	1,327	15	1,139	16	1,132	
	지역연고산업 육성	1	107	-	-	-	-	'18년 일몰사업 (산업통상지원부)
	산학연 기술개발 지원	-	-	-	-	10	2,993	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# 부칙

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이 중 서울형 R&D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혁신챌린지, 공공테스트베드 등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, 도시문제 해결과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원하고 있음.

<서울형 R&D 지원 사업 현황>

(단위 : 백만원)

분 야	단 위 사 업	2018년			2019년			비 고
		계속	신규	예산 집행액	계속	신규	예산액	
총 계		14	196	20,807	61	316	35,713	
혁신형 R & D	기술상용화 지원 사업	-	149	3,879	-	130	5,000	크라우드펀딩형 공개평가형
	서울혁신챌린지 개최	2	32	1,240	34	32	2,640	
	서울글로벌챌린지 개최	-	-	-	-	20	1,000	신규과제
	공공 테스트베드 제공	-	12	5,496	12	100	10,000	
일반형 R & D	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	4	-	1,900	4	-	881	2개 과제 18년 사업비 교부
R & D 생태계 지원	서울시산학연협력 활성화 사업	-	1	270	1	-	270	
	재외한인과학자 학술 포럼 개최 지원	-	-	50	-	-	50	비과제형 사업
스마트 시티 구현	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	5	1	2,880	6	-	2,800	
	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지원	-	1	2,000	1	-	2,000	
	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	3	-	1,500	3	-	-	18년 사업비 교부
거점 지역 R & D	홍릉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의료 R&D	-	-	-	-	10	3,000	신규과제
	양재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R&D	-	-	-	-	10	2,880	신규과제
	G밸리 내 산업 간 융·복합 R&D	-	-	-	-	10	1,000	신규과제
	동대문상권 활성화 위한 프로젝트	-	-	-	-	4	1,000	신규과제
과제 관리/운영비	서울형 R&D 지원	-	-	1,547	-	-	3,036	
	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	-	-	45	-	-	156	

-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산업진흥원은 2개의 팀(R&D사업팀, 기술혁신팀)에서 R&D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나, 사업 프로세스에 맞춰 ▶ 과제선정과 지원, ▶ 지원성과를 나눠 수행하는 것이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민간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 형성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은 2023년까지 총 1,500억원을 집중투입해 1천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지원할 계획임.

<테스트베드 서울 추진 계획>

지 표		단 위	계	2019	2020	2021	2022	2023
계			1,000개 1,500억	50개 100억	125개 200억	200개 300억	275개 400억	350개 500억
혁신기술 실증지원	기업 수	개	500	50	75	100	125	150
	지원액	억 원	1,000	100	150	200	250	300
혁신 제품· 서비스 구매	기업 수	개	500	-	50	100	150	200
	구매액	억 원	500	-	50	100	150	200

-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학연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- 한편, 2019년부터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의 협업으로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제 평가와 선정의 지연,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노정되고 있어 수행기관의 일원화 등 업무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함.

#### 다. 산학연 사업의 재계약 타당성 검토

- 산학연 협력사업은 R&D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선정 과제의 관리를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임.
- 또한,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업무에 적합하고, 기술개발 이후의 상품화,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위탁기관으로 타당해 보임.
-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산학연 사업 수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재계약자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음.



## 〈종합성과평가(조직담당관, '19. 6. 21.) 결과〉

- 전반적으로 '우수' 평가(총점 100점 중 86.0점 획득)
  - 평가 결과, 대부분 평가지표에서 A0 이상을 획득하였으며, 공통사무평가 총점 37점 중 29.92점, 개별사무평가 총점 48점 중 42.47점, 사용자 만족도 평가 15점 중 13.61점을 획득함
- 민간위탁사무와 직접 연계되는 '사업성과' 부문에서 고득점
  - 사업성과 부문의 총점 40점 중 36.04점을 획득하여 특히 강점을 보였으며 대부분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
  - '사업화 매출액', '채용 인원', '기술개발 지원 기업 수' 등의 지표에서는 만점을 받음
- 검토의견 : 재계약 대상자로 적정
  - 조직담당관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, '미흡사항'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

○ 다만, R&D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서울혁신 챌린지, 공공테스트베드 등 신규사업 예산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.

○ 아울러, 서울형 R&D 지원 사업의 담당부서 이원화와 서울기술연구원의 공공테스트베드 업무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추진 방식의 개편이 필요함.

- 한편,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제290회 정례회에 제출되었음.
- 그러나,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」에서는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·개정,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, 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같은 회기에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집행부가 수립한 자체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6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, 대학, 연구소에 대한 R&D 지원과 신기술 시장성 검증 확대를 통해 서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,
- 나.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
- 다.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 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(사무형)
-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1.1.~2022.12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- 수탁기관 : 서울산업진흥원(마포구 월드컵북로 400)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48,607백만원('20년 예산안)

##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2(사무의 위탁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, 산·학·연의 수요에 맞춘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
  -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,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 증가,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가 가능함

## 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
- 서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
-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
- 중앙정부 R&D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
- 기타 '市'가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라.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

-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('19. 6. 21.) : 적정
-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19. 9. 17.) : 적정
-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('19. 10. 2.)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**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,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·기술을 개발·보급·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24조 (산학협력계약)**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39조 (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·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20조(산학연 협력사업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**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산학연 협력사업을 촉진·지원하는 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23조의2(사무의 위탁)**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**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**부 칙**

**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**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오권영 (☎ 2133-5226)